『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』

구 분	내 용
신청기간	**2023.01.01.~배정인원 소진 시까지(150명)**
기 업	■ 기업 :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**(지식서비스산업관련업종외, 청년창업기업 일부 1명이상~5인미만 기업가능)**
청 년	■ 청년 : 채용일 현재 만 **15세~34세** 이하.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❶ 채용일기준 **"연속하여 6개월 이상"** 실업 상태인 청년 ❷ **고졸** 이하 학력 ❸ **고용촉진장려금**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❹ **국민취업지원제도**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❺ **청년도전지원사업** 수료 청년 ❻ **자립준비 청년 외**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❼ **북한이탈청년** ❽ **자영업 폐업** 이후, **최초**로 취업한 청년 ❾ **최종학교 졸업일** 이후 채용일까지 **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. (단, 대학(원) 졸업예정자 및 졸업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제외)**
지원요건	■ **채용조건** - **'23.1.1.일 이후 채용된 청년** - **'23.1.1.일 이후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** - 원칙적으로 기업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 *단, '23.1.1. 이후 채용된 청년 중 **채용일**로부터 **3개월 이내에 기업이 참여 신청한** 경우 지원 가능 ■ **인위적 감원 방지** -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
지원내용	■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 : **1년차 연 최대 720만원(월60만원 X 12개월)** **2년차 최대 480만원(24개월 근속시)** - 참여 청년이 최소 **고용유지기간 6개월 이상 근로 후 지원금 신청** 가능
진행절차	❶ 기업 참여 신청, 심사승인 및 협약 체결 ❷ 기업,청년채용 후 임금 지급 ❸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사전 심사 ❹ 지원금 지급 의뢰 ❺ 지원금 요건 최종 심사 및 지급 **(단, 기업 참여 신청 이전에 미리 채용한 청년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채용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)**
신청방법	■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(www.work.go.kr/youthjob) 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 하여야 함 ※ 운영기관『**제천단양상공회의소**』지정
문 의 처	■ 제천단양상공회의소 (☎ 043-642-3114 /팩스 043-642-3112)